

제55조 세 율



제55조의 요약

법인구분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내국법인 (모든 법인)	2억원 이하 금액 2억원 초과 금액	10%(과표 2억원까지×10%) ⇨ 2009년까지는 11% 22%(2,000만원+2억원 초과액×22%) ⇨ 2012년부터는 20%임.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	9%(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중전 12%)

(2007년까지는 1억원까지 13%, 1억원 초과액부터 25%이었음)



●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본 조의 개요

① 2010년부터는 10%, 22% 적용됨(2009년은 11%, 22% 적용)

본 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본 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금액의 10%」를,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2%」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법인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출세액에는 자가급등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합산한다.

본 개정세율은 2007년까지는 13%(1억원까지)와 25%(1억원 초과부터), 2008년은 11%(2억원까지)와 25%(2억원 초과), 2009년은 11%(2억원까지)와 22%(2억원 초과), 2010년부터는 10%(2억원까지)와 22%(2억원 초과)가 적용되며, 2012년부터 10%(2억원까지)와 20%(2억원 초과)가 적용된다. 참고로 2004년까지는 15%(1억까지)와 27%(1억 초과), 2001년까지는 16%(1억까지)와 28%(1억 초과), 1993년까지는 20%(1억까지), 34%(1억 초과), 1994년까지는 32%(1억 초과), 1995년까지는 1억까지 18%, 1억 초과는 30%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고 영리법인은 일반법인과 비상장대법인으로 다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영리, 비영리, 상장, 비상장, 대·소규모간의 세율차이는 없어졌다.

② 1년 미만 사업연도

이밖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은 1년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며,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실제의 사업연도 월수만큼을 계산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left(\begin{array}{l} \text{본 법 제13조 규정상} \\ \text{과세표준금액} \end{array}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1년환산 과세표준) (2단계 세율)

여기서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면제나 감면세액은 당해 감면소득의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다음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다.

$$[\text{면제(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text{면제(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

II. 산출세액계산을 위한 세율 (법 제55조제1항)

1. 세율의 개념과 적용세율

① 세율의 개념과 결정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대상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세율은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적 표현으로는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소득·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다. 법인세로 좁혀 보면 법인이 창출한 소득을 국가와 법인 혹은 주주간에 어떠한 비율로 배분할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국가의 세수계산 경제상황 등에 따라 상하조정된다.

② 세율의 분류와 종류

세율은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에 적용되는 것과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종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율이 100분비 등으로 표시되고, 후자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된다.

종량세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표시된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체체적(滯遞的)으로 높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계급정액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에 관계없이 계속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정액세율이 있다.

종가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시 누진세율·비례세율 및 역진세율로 분류된다.

③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누적해서 올라간다는 뜻으로 과세대상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

되는 세율이 점차로 높아지는 세율이다. 대부분 창출된 소득이나 이득, 이익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해당된다.

④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계속 비례관계에 있다는 뜻인데 과세대상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금액에 대해 같은 비율로 징수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소비세에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 등을 들 수 있다.

⑤ 현행의 적용세율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의 종류나 유형에 관계없이 본 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2009년까지는 11%)를,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2억 초과액×100분의 22(2009년도 2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산출세액]

=2억원까지×10%⊕2억원 초과×22% (* 2012년부터는 10%, 20%)

=과세표준 금액×22%-24,000,000원(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10%)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까지를 감안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법 및 과세표준 금액 법인구분	법인세법(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2억 이하	2억 초과	
일반 영리법인	10%	22%	
비영리법인	10%	22%	
주권상장법인	10%	22%	
주권비상장법인	10%	22%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	10%	22%	
조특법상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조합법인 등 : 신탁, 농·수·임협 등)		9%

2012년부터는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⑥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2억까지는 11%, 2억 초과금액은 22%
- ⑦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2억까지는 11%, 2억 초과금액은 25%
- ⑧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억까지는 13%, 1억 초과금액은 25%
- ⑨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억까지는 15%, 1억 초과금액은 27%
- ⑩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억까지는 16%, 1억 초과금액은 28%
- ⑪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억까지는 18%, 1억 초과금액은 30%
- ⑫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억까지는 18%, 1억 초과는 32%
- ⑬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1억까지 20%, 1억 초과는 34%

⑭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세율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형태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영리법인 중 비상장대법인은 일반법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는데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였었다.

2. 일반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이는 본 법에 의한 제반 공제·감면세액이나 가산세 등 여러 가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다. 일반적인 경우의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①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산출금액이 150,000,000원인 경우의 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
 $\times 10/100 = 150,000,000 \times 10\% = 15,000,000$ 원

②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경우

◎ 과세표준금액이 375,000,000원인 경우의 산출세액=2,000만원+(과세표준금액-2억원) $\times 22/100$ =과세표준금액 $\times 22/100$ -2,400만원=375,000,000 $\times 22\%$ -24,000,000=58,500,000원

③ 조합법인 등 세율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조합법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010. 1. 1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0. 1. 1 개정)
3. 삭 제 (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010. 1. 1 개정)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7.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연초생산협동조합 (2010. 1. 1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0. 1. 1 개정)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3. 12 개정)
-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기장(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조합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 산출세액} = \text{당기순이익} \times \text{과세표준금액} \times 9/100$$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⑤ 당기순이익 과세포기한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 등의 경우는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text{◎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금액} \times 10/100$$

포기후의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text{① 산출세액} = 2,000\text{만원} + (\text{과세표준금액} - 2\text{억원}) \times 22/100 = \text{과세표준금액} \times 22/100 - 2,400\text{만원} (2012\text{년도 } 20/100)$$

Ⅲ.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의 산출세액계산

(법 제55조제2항)

1. 사업연도소득의 1년 연환산

① 사업연도 1년 환산 규정 및 방법

본 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1년 연환산액으로 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사업연도가 1년이 안되는 법인도 형평과세를 위해 1년 동안 사업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환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1년 미만 기간의 과세소득을 1년으로 가중치 부여하여 1년치 추정소득을 계산한 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text{산출세액} = \left(\frac{\text{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text{사업연도의 월수}}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상기 시행규칙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left\{ \left(\frac{\text{본 법 제13조 규정 적용 한 금액(과세표준금액)}}{\text{사업연도의 월수}}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frac{\text{2단계 세율}}{\text{세율}} \right\}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사업연도 1년 환산시의 월수계산

사업연도의 월수계산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작일부터 누적계산하여 7달 10일이면 8달이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 1년 환산 세액계산사례

최초 사업연도가 2010년 5월 19일~2010년 12월 31일인 일반 영리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이 150,000,000원이라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1년 환산금액】

$$=150,000,000 \times 12/8 = 225,000,000 \text{원} (7\text{개월 } 13\text{일} \rightarrow 8\text{개월})$$

【산출세액】

(방법 1)

$$=(225,000,000 \times 22\% - 24,000,000) \times 8/12 = 17,000,000 \text{원}$$

(방법 2) 이를 일괄 계산 산식으로 하면

$$=((150,000,000 \times 12/8) \times 22/100 - 24,000,000) \times 8/12 = 17,000,000 \text{원}$$

(잘못된 계산)

⇨ 1년 환산 안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50,000,000 \times 10\% (2\text{억 미만}) = 15,000,000 \text{원}$$

(2억 이하와 2억 초과와 2단계 세율이므로 1년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액이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 됨)

2. 사업연도소득의 1년 연환산이유

① 납세부담비율의 형평화

법인세 세율의 적용방법을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연도가 다름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간의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상반기 150,000,000원, 하반기 150,000,000원)인 영리일반법인이 사업연도를 1년으로 하였을 때와 6개월씩으로 하였을 경우의 1년간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1천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사업연도를 1년으로 한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text{◎ 산출세액} = 300,000,000 \times 22/100 - 24,000,000 = 42,000,000(\text{원})$$

사업연도가 6개월씩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text{◎ 산출세액} = 150,000,000 \times 10/100 \times 2\text{개} = 30,000,000(\text{원})$$

따라서 사업연도소득 혹은 과세표준을 1년 단위 연환산금액으로 하여야 특정법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기간을 임의로 6개월 등으로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결국 납세부담액은 같아지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1년보다 짧게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IV.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산출세액의 관계

① 신고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

법인이 매년 납부할 세액은 일반적 기준이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별한 감면세액 등을 뺀 후 여기에 법령위반 등의 가산세를 더하여 낸다. 이의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법인세액	=	일반 산출세액	-	세액면제	+	가산세액
		⊕		세액감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법인세		세액공제		

여기서 세액공제액은 본 법 제57조, 본 법 제58조에서 해설하였고 가산세액은 본 법 제76조에서 구체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본 법 제56조에서 해설하였다. 또한 세액면제·감면규정은 본 법 제59조에서 해설하였다.

② 면제·감면세액의 계산방법

산출세액에서 뺀 감면세액 등은 당해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구성비율만큼으로 한다. 산출세액에 합산 포함되어 있는 면제소득 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면제세액이나 감면세액이라 한다. 이는 본 법상의 비과세소득이나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잔액인 과세표준금액에서 면제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한다.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된 공제액 등과 당해 감면면제소득 등이 중복되면 이를 안분계산하거나 감면한다. 이런 과정을 통한 공제·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1차적으로 공제한다.

③ 산출세액 범위내의 공제·감면세액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만 감면하는데, 이는 면제세액과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자체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